

#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김 기 덕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최근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감정노동 영역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「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는 등 서울시에서도 관련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그 보호 대상에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, 반복적인 악성민원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에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감정노동 종사자 대상에 공무원을 포함하고(안 제2조제4호),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업무에 방해가 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반복하여 제기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는(안 제15조제4호) 것입니다.

□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